

< 2017년 관세법 개정사항 교재순 >

* 개정내용

1. 관세법 법률 제14379호 2016년12월20일 일부개정 (시행 2017년 1월1일)
2. 관세법시행규칙 기재부령 제588호 2016년12월30일 일부개정(시행 2017년 1월1일)
3. 관세법시행규칙 기재부령 제589호 2017년 2월15일 일부개정(시행 2017년 2월15일)

▶ 개정(이동) - 교재 33페이지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시행령에서 법으로 이동

▶ 개정(이동) - 교재 34페이지

4. 월별납부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시행령에서 법으로 이동

▶ 개정(신설) - 교재 98페이지 ★

(6)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증명자료 제출요구

세관장은 제출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에서 제30조제1항(1평가방법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기한내 미제출시 과세자료결정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6)에 따른 증명자료를 (4)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른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5조(2평가방법부터 6평가방법)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보완함

▶ 개정(신설) - 교재 137페이지

(3) 덤픽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픽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무역위원회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픽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해설) 덤픽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조사시 국내시장구조 사항을 조사에 반영하기로 함

▶ 개정(신설) - 교재 152페이지

(3)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무역위원회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해설)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시 국내시장구조 사항을 조사에 반영하기로 함

▶ 개정(신설) - 교재 221페이지 ★★★

(3) 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①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내 경정결정 미통지시 불복청구

상기 ①②③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개정(신설) – 교재 223페이지 ★★

⑥ 기한내 경정결정 미통지시 불복청구

상기 ③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경정청구

구 분	청구 시기	세관장의 결정통지여부
일반경정청구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경정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 통지
후발적 경정청구	관결등의 사유발생한 날부터 2개월	경정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 통지
국제조세조정경정청구	세무서장의 결정 등부터 2개월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경정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 통지

해설) 후발적 경정청구시 경정결정통지 규정을 신설함

모든 경정청구시 기한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 규정을 신설함

▶ 개정(개정) – 교재 320페이지

③ 기계,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가.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 100분의 50

▶ 개정(개정) - 교재 360페이지 ★★★

7.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1) 의의

세관공무원은 법 제110조 제2항 각 호를 조사하기 위해 당해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기타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위임받은 자 포함)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납세자 등의 예측가능성 증가를 위해 개정

▶ 개정(신설) - 교재 373페이지 ★★★

④ 대리인 :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 본인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해설) 납세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함

▶ 개정(신설) - 교재 375페이지 하단 ★

3. 결정의 내용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 다.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설) 각하사유를 구체화 함

▶ 개정(신설) - 교재 431페이지 ★★

(2) 직권채취 및 수입신고수리의 의제

①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③ 상기 ① ② 규정에 의하여 채취된 물품이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해설) 견본품에 대한 비과세대상 확대

▶ 개정(신설) - 교재 444페이지 ★★

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특허수수료율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 개정(개정) - 교재 449페이지 ★★★

(2) 특허의 취소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① ② 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 ② 법 제175조 각 호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③ 1년 이내 3회 이상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 ④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⑤ 운영인 명의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해설) 특허취소요건 완화

▶ 개정(개정) - 교재 455페이지 ★

(2) 사용신고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 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한 증명의무 완화(제186조제2항)

보세공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만 세관장에게 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임을 증명하도록 하여 보세공장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함.

▶ 개정(신설) - 교재 608페이지

(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개정(신설) – 교재 672페이지 ★

< 별첨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8조제4항(매각대행기관)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233조의2제2항(원산지정보 수집, 분석)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제255조의2제2항 후단(AEO)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사람
4. 제322조제5항(통계자료및통계의 작성및교부업무)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6.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7. 제3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체신관서의 장
 - *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 화물관리인
 - * 운영인
 - *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 *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와 관련된 단체

< 2017년 관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사항 교재순 >

- 공표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시험과 관계없음.

* 입법예고 내용

1. 관세법시행령 입법예고 기재부공고 제2016-221호

▶ 입법예고(삭제) - 교재 28페이지

(2)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요건

(1)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 .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①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② 체납된 내국세등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삭제

③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해설)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 확대

▶ 입법예고(신설) - 교재 95페이지

(2) 잠정가격 신고대상(대통령령)

① 거래관행상 거래 성립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일차산품에 한함)

②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조정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정하여질 수 있음이 잠정신고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③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④ 특수관계가 있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법 제30조제1항본문에 의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수리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산가격으로 저정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⑤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특정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입법예고(개정) - 교재 138페이지

⑥ 무역위원회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펑방지관세부과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3.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 및 수락**

▶ 입법예고(개정) - 교재 140페이지

② 잠정조치의 적용 및 기간

잠정조치는 예비조사결과 덤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덤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지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9개월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입법예고(개정) - 교재 142페이지

⑦ 수출자의 약속 불이행시 조치

수출자가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즉시 덤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덤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때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입법예고(개정) - 교재 144페이지

* 덤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소급부과대상

상기 단서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3.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필요한 경우 가격위반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 입법예고(개정) - 교재 181페이지

- * 아프가니스탄, 라베리아 삭제
- * 덴마크 자치령 추가

*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지 역	국 가
1. 아시아	부탄
2. 중동	이란 · 이라크 · 레바논 · 시리아
3. 대양주	나우루
4. 아프리카	코모로 · 에티오피아 · 소말리아
5. 유럽	안도라 · 모나코 · 산마리노 · 바티칸 · 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입법예고(신설) - 교재 189페이지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세청소속 공무원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③-1 ②의 3.및 4.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1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1 관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1조제4항(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③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입법예고(신설) - 교재 237, 238페이지

2.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구성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세관공무원

㉡ 변호사 . 관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상공계의 대표

㉣ 기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②의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의 해촉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8.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 입법예고(삭제) - 교재 313페이지 하단이후 추가

⑥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가.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제조·수리공장의 명칭·소재지·구조·동수 및 평수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나. 상기 가.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신할 수 있다.

다. 세관장은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항내의 특정지역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지역을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 법 제175조(운영인 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삭제

▶ 입법예고(신설) - 교재 328페이지 하단이후 추가

2-1.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개월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 세관장이 설치장소의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를 확인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 연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③ 용도세율의 적용을 승인받은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조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부기간 만료 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 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신고자의 성명·주소

▶ 입법예고(신설) - 교재 364페이지

2)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①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자 4인
- ② 법률 또는 재정·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1) 임기 및 해임등

①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관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기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입법예고(신설) - 교재 373페이지

② 대리인 :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 본인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입법예고(개정 및 신설) - 교재 378페이지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④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청장 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관세청장 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屬)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8조제5항(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입법예고(신설) - 교재 443페이지

(3)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신청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란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1 신청자격 제한

관세청장은 ①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동법 제5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신규특허에 대한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192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점수를 감점하도록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2.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3.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5.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6.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 입법예고(개정) - 교재 454페이지

4.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1) 의의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보세공장 원재료)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만,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물품 등 제품의 생산, 수리, 검사 및 포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 ①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②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단서삭제
- ③ 당해 보세공장에서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생산되는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 입법예고(신설) - 교재 532페이지

2)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관세청에서 원산지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② 관세청 · 관세평가분류원 · 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 ③ 그 밖에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1 ②의 ③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2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3 관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입법예고(신설) - 교재 537페이지

② 신고절차

가. 지식재산권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 ⓑ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 ⓒ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 ⓓ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가.에 따른 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가. ④에 대한 신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 나.에 따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부

터 10일 전까지 지식재산권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신고인에게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개신하려면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개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마. 세관장에게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되는 날부터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권리가 취소 또는 무효, 말소가 확정된 때
2.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때
3. 지식재산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을 때
4. 지식재산권 신고자가 신고 철회를 신청하여 수리된 때

▶ 입법예고(개정) - 교재 538페이지

③ 통관보류기간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 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통관보류등이 법원의 가보호조치에 의하여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 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법원에서 가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한 경우 : 그 마지막 날
- ⓑ 법원에서 가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가보호조치 개시일부터 31일

▶ 입법예고(신설) - 교재 541페이지

(2) 반입명령 대상물품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①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② 수입 후 의무 이행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④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또는 표지를 부착 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 또는 표지를 부착한 경우

그러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경과되었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입법예고(개정 및 신설) - 교재 546페이지

④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1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 입법예고(신설) - 교재 570페이지

2. 수출통관절차

(1) 수출신고

① 수출신고의 의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출신고의 요건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제조공장 또는 창고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한 후 신고할 수 있다.

③ 위법 가능성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의 요건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1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 가.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2.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 후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다. 반입 후 신고대상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절차 및 신고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